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765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20. 11. 24

판 결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7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0.5. 15. 접수
제51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1)

원고는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인바,D이 C과 사이에 2019. 3. 23.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2/17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 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C을 상대로 위 분할약 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20. 5. 2.자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C이 2020. 5. 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아들인 피고에게 2020. 5. 15.자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바,C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사해행위 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의 하나로서 이는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임을 요한다.

그런데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원고가 C에 대하여 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 에 해당하는 어떠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실질적으로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판결), 이 사건 소의 취 지를 위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C과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최두호

별지

1)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20. 11. 30.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위 주장은 이 사 건 청구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